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12. .
국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2월 25일, 정성호의원 등 13인

나. 회부일자: 2025년 2월 2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방위원회(2025.9.2.)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25.11.26.)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
반영폐기)

제8차 국방위원회(2025.11.27.)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정성호의원)

현행법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들이 소속된 학생이나 직원이 병력동원소집에 응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는 기간을 결석이나 휴무 처리 등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게 하면서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형사제재 규정은 적용된 사례가 없을 정도로 사문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불이익 처우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군의 조사권 등 시정에 필요한 권한과 절차가 미비하여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권익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이 병력소집에 동원된 사람에 대한 불이익처우를 신고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사실조사와 시정 및 예하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불응하는 자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관련 예비군법을 준용하도록 하여 국가가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함(안 제74조의5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서덕교)

☐ 개정안은 「병역법」에 따른 병력동원훈련 소집 등에 응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가 발생한 경우 그 신고와 처리에 관한 사항을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안 제10조의4 및 제10조의5를 준용하려는 것임.

☐ 다만, 동 개정안의 전제가 되는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훈련 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비상근 예비군에

대하여 직장, 학교에서의 불리한 처우 금지의 예외 조항을 두고 있는데, 「병역법」에도 「예비군법」과 같은 취지로 병력동원훈련 소집 등과 관련하여 직장·학업 보장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률 적용의 명확화를 위하여 「병역법」에도 훈련기간이 장기인 비상근 예비군에 대한 병력동원훈련 소집 등과 관련하여 불리한 처우 금지 예외 조항을 둘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부승찬)

정성호의원 대표발의안 등 4건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함.

대안의 주요내용은 병력동원소집 등에 응한 사람에 대한 불이익처우의 시정과 관련된 사항을 「예비군법」 관련 조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비상근 예비군 훈련 소집기간 중 연간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불리한 처우 금지 예외를 인정하려는 것임.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